

## [2023 Bestlo 통합사례 경찰행정법] 정오표

7면

쟁점 포인트를 다음 내용으로 수정

POINT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 설문(1) -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참고조문으로 주어진 행정소송법과 도로교통법을 활용하여 행정심판이 필수적 절차인지,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한다.
- 설문(2)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먼저 사안의 별표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그 후 그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판례, 검토를 서술한다.
- 설문(3)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에 따르면 [별표28]은 행정규칙이므로 이에 위반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처분의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 취소와 강학상 철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고 바로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126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다음 내용으로 수정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계획재량이라는 계획상의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계획재량은 그 통제와 관련하여 특유한 하자이론인 형량명령이론이 적용된다.

202면

참조조문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0조에 “있다.”를 추가

**제20조(폐기처분 등)**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되는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그 사행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207면

목차 3. (1)을 다음 내용으로 수정

### 3.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1) 문제점

사안에서 경찰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甲에게 제시하고 수거증을 교부하였으나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는 부여하지 않았다. 강제수거조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 제22조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위법이 없는지 문제된다.

230면

목차 2. (1) 학설 ③을 다음 내용으로 수정

### 2.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1) 학 설

① 헌법상의 영장제도는 본래 형사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영장불요설, ② 영장제도의 취지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행정조사에도 영장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영장필요설, ③ 기본권보장을 위해서는 영장주의가 행정조사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315면

설문 II 2. 국가배상청구 성립요건 충족 여부 (2) 사안의 경우에서 두 번째 줄의 법명을 다음 내용으로 수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51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다음 내용으로 수정

사안의 경우 시장 A의 영업장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甲이 영업을 계속 함으로써 감염병까지 발생하여 직접강제 이외에 대집행 등 다른 절차를 거칠 수 없었으며, 감염병을 막기 위한 다른 수단을 생각할 수 없는바 최후의 수단에 해당한다.

281면

밑에서 세 번째 줄 판례를 다음 내용으로 수정

**(3) 판례**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객관설의 입장이나,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한다.

282면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마지막 줄의 객관설을 절충설로 수정

한편 오작동 신고를 3번이나 받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주관설과 절충설에 따르더라도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414면

3.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의 인정 여부 (1) 문제점에서 첫줄을 다음 내용으로 수정

**(1) 문제점**

공법인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해방지법규에 구속되므로 실질적 경찰책임을 진다. 그러나 공법인에게 형식적 경찰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즉 경찰행정기관이 경찰상 위해를 야기한 공법인에 대하여 명령을 하여 복종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